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3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3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 

### 상정된 안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 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 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 4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 4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 4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 4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 4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 4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 4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 4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4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4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4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4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4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4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4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4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4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4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4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4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4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4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5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5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5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5
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5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5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5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5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5
3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5
3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642)	5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5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5

(15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 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자는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7)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5)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3)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1)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7)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9)
15.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16.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1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2)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1)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3)
24.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9)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0)
- 3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9)
- 3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 35. **국유재산특례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 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9)
- 3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4)
- 3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5)
- 3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2)
- 4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 4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6)

○**소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 내용 중 오늘 정리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 자구 정리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권의 212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정 유보 등 금지에 관한 박정 의원안에 대해 자구 수정의견으로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 수정의견을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의견은 별지로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박정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의 유보 및 배정 예산의 집행 유보를 금지하려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 유보 등을 못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그전에 시·도지사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는데 협의 이상으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 의견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지난번에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무조항을 넣자,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조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원래 박정 의원님이 이렇게 법안을·발의해 주신 취지 그리고 이 앞에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신 데 대한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수정의견을 낸 것하고 관련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협의의 주체가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뒤에 내용을 좀 확인해 봤더니 시·도지사협의체하고 교육감협의체는 정식으로 행동 주체가 아니고, 적법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고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협의의 당사자로 지정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희가 다른 조항들 몇 개를 확인해 봤더니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렇고 국가재정법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장관과의 협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에 돼 있는 협의 대상인 시·도지사협의체와 교육감협의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앞에 소위 하실 때 저희가 최종 의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43조 9항에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포괄 조항을 반영하는 걸로 거의 지금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갈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앞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했던 그 조항으로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견건이 사안사안마다 자체 없이 보고하고 다시 국회의 피드백을 받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봤을 때도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182조하고 42조 원래 조문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2조를 보시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호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협의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42조도 교육감협의체가 있는 거네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2조는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실제 법률적 주체, 당사자인데 기재부가 왜 협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봤을 때는 시·도지사협의체는 시도 간 의견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시도와 행안부장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건 모르지만 시·도협의체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주체로 명시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라는 염연한 협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을…… 내부에서 시도지사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 기능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처 장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대표로 나선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182조 제4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협의체나 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연합체에서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은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소위원장 정태호**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도지사협의체 혹은 교육감협의체가 소위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것과 유사하게 시·도지사협의체나 교육감협의체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다른 입법례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주로 행안부장관하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한테 의견을 줄 수 있고 행안부장관은 이를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 행안부장관하고는 이러한 법령에 대한 의견 등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행안부장관만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소관해서 시·도지사협의체는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겠지만 시·도교육감협의체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겠지요? 그런 구조겠지요, 그러면?

○**진성준 위원** 그러겠지요.

○**조승래 위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법체계나 혹은 협의체의 법적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간다라고 본다면 행안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구체화시키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교육자치법을 일부 바꿔야 되겠지요,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나 시·도교육감협의체에 대한 법적 성

격을 명확히 해서 법적인 권한 혹은 역할로 부여한다면 모를까.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저는 기재부에 묻고 싶은데요. 이거를 개별 시도시자들과 다 협의, 그러니까 1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다 협의해야 되고 또 17개 교육감과 다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재부로서는 공연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더 소모적일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만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시·도지사협의체 그리고 교육감협의체를 논의 주체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행정안전부장관 아니면 교육부장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기재부 차원에서 일이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입법의 취지에도 맞고 법체계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진성준 위원** 좀 이상한데, 말씀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도지사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또 교육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장관과 또는 교육부장관과 직접 자기 소관 사무 등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거지요. 그런데 재정은 더 긴밀하게 지방 예산에 또는 지방교육청 예산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과 개별적으로 다 협의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법정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협의체와 행안부장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지 다른 모든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진성준 위원** 기본적으로야 그런 취지로 규정된 법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다시 기재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불용 이런 것을 그동안에 과도하게 해 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법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기재부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 운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협의를 하자고 하고 또 그 협의도 사실은 너무 낮은 차원이다,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기재부의 뜻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담자 해서 국회에 보고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원래 법안의 취지는 아예 세수 부족으로 예산 배정을 못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교육 예산과 지방 예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취지로 발의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 정도를 해서 그 범위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기재부가 지난 회의 때는 협의라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협의체가 법적 주체가 아니네…… 저는 법적 주체는 충분히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행안부나 교육부장관을 협의 주체로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게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제는 예산편성권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팬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나 다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봐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처여서 이번에 기재부 개혁의 핵심적인 요구도 그런 것 때문에 비롯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정부를 대신하거나 지방교육정부를 대신해서 협의하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소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양당 간사가 협의는 했는데 기재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실은 협의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보통명사 비슷한 거거든요. 무슨 무슨 A 기관, A 부, A 청, A 처 이런 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체로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방식을 보면 기재부장관은 다른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 장관이 그 밑에 예를 들면 시·도지사, 시·도지사협의체, 교육감, 교육감협의체랑 의논을 해서 의견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왔던 것이 관행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형식이 되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장관들이 전부 끌려갈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은 행안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자기 부처가 걸린 일인데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형태라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자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경기도부지사 오래 하면서 보면 지방예산 내시 같은 것을 기재부로부터 직접 받지를 않아요. 행안부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내시가 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정부의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분요.

질문해 볼게요.

차관님, 시·도지사협의체하고 교육감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잖아요? 이거는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도지사협의체나 교육감협의체는 시도의 주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주체로서 계속 활동을 해 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지요. 그리고 그 조직의 결정이 시·도지사나 그다음에 각 교육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건 현실이잖아요. 부인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런데……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시·도지사협의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관은 맞고요. 그리고……

○**소위원장 정태호**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답변 취지는 제가 잘 알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면서 주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그 통로라는 게……

○**소위원장 정태호**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포괄적으로 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데 기재부가 여태까지 시도하고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합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판례에 보면 정합성의 문제는 그 정합성에 흡결이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위반한 것이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춰 볼 때 이게 형식적으로는 협의체랑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정합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들을 충합하는 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이 각 시·도지사랑 협의하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이게 다른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나 이런 시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자의 입법 의도와 재량이 포함, 이렇게 제정해도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 182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있고 행안부장관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에서 지방자치 등과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 행안부장관에게 보내고 행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의견이 있으면 행안부장관에게 보내고 행안부장관은 다시 시·도지사협의회에 보내는, 행안부장관은 거의 뭔가 재량을 개입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중간 통로 역할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조항도 아까 같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간에 행정안전부장관 그 문구 하나를 넣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밑에도 교육부장관을 통하여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교육감협의체나 지방자치단체협의체나 실제로 그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어떻게 이 교육감들을 일일이 다 상대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수정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기재부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제는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 수정안이 법체계상 큰 문제가 없다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성준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이건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문제없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합의안이잖아요.

○박수영 위원 사실 그동안의 정부 관행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큰 변화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설 조직은 맞습니까? 협의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박수영 위원 위원장이, 협의체의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인천시장인가 그럴 텐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유정복 시장님.

○박수영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을 인천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설 조직이 없이 위원장 바뀔 때마다 쟁쟁 바뀌는 이런 조직 아닌가, 비상설, 애드혹(ad hoc) 조직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직도가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설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상설 조직입니까? 전에는 사무총장을 회장 하는 도에서 맡고 이랬는데 거기에……

○조승래 위원 사무총장은 돌아가면서 해요.

○박수영 위원 밑에 상설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승래 위원 다 파견자로 구성돼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거기 밑에 차장이 있고요. 윤리복무담당관, 홍보실, 정책국, 정책협력단, 행정국, 그다음에 국제관계지원실, 해외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해외사무소까지 있고?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중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상당히 변화를 주는 거지만 위원장님의 오랜 숙려 끝에 말씀하신 거라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회의록 기록을 위해서 하실 말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자는 측면에서 지금 소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셨고요. 이 말은 남기고 싶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시도 내부에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한 거고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 조항을 연계해서 가면 여기 협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도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장치고 이 협의회가 외부로 의견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 지방자치법의 취지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번 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교육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기초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오늘 이 수정안을 제출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소위 심사자료 4권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수출입은행법을 논의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은석 의원님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항목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당초 대출·보증과 연계해 출자해야 하는 것을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하는 규정이 삭제될 경우에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자금 운용방식에 무분별한 확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확대 등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사전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대출하고 보증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으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의견 주신 것하고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우려가 되니 수익성 확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뒤에 부대조항을 같이 달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정부안은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보고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요. 그 뒤에 단서 조항으

로 ‘이 경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주시면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은 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같이 고려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이요.

○진성준 위원 저는 이 조항을 담은 또 다른 수출입은행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부가 결국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 이게 유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병합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왜 저희부에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이 그렇게 완강한 입장을 폄시니 정부가 제안하고 또 수석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익성 확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몇 %, 몇 % 그런 정도로까지 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과 손실 및 출자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그리고 외부로 공표하기 어려운 수출입은행의 상세한 내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기왕에 대출이나 보증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기존에 대출이나 보증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런 제한 없이 막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출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돼야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염격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보면, 당연히 수익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기준과 조건을 설정해서 출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수정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최은석 위원 예, 당연히 그런 데 대한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번만 더…… 저도 사실 질의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대출 또는 보증을 연계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법에는 ‘이 경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정도로 본문에는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도대체 어찌할 생각인 거냐, 그래서 대통령령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과 손실 및 출자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출입은행이 내부 심사기준을 정할 텐데 그런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된다 이런 정도로 대통령령에도

규정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께서도, 원래 법을 제출하신 분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수정한 대로,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전제가 되는 게 수익성 확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대통령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인증되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 또 충분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선언적 의미가 있는지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이것 무슨 뜻인지 못 읽겠는데. 법을 위한 법 같기도 하고 문구 같기도 하고……

이 4개를 충족하는 것을 뭐로 지금 담보로 한다는 거지요, 대통령령에다가? 뭘 어떻게 담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통령령에는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과 손실 및 출자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수출입은행이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은 수출입은행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법에……

○**박대출 위원** 지금 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출자하고 관련된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대출하고 보증하고 연계된 것만 출자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대출하고 보증 연계 없는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출자는 수출입은행이 한 적이 없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준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오히려 단순화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런 문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법은 많이 안 봤지만 법이 좀 이상해.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박대출 위원** 아니, 조문이 이상해. 우리가 법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제가……

○**박대출 위원** 최은석 의원안에서 정부 대안을 넣었을 때 이것을 단순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박수영 위원** 아마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박대출 위원** 이게 억지 문구 같아요, 억지 문구.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다른 사람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박수영 위원** 아마 수출입은행에서 수년 동안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출·보증하고 관련 없는 데다 출자를 하는 경우 기재부의 걱정은 이게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고 빌려주는데 또는 대출을 하거나 출자를 하는데 수익도 안 나는 맨날 손해 볼 이런 것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조문을 넣어서 기재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공자님 말씀을 넣는 건데 그게……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걸 억지로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문구예요. 이런 것 만들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런 문구 만들면 비웃어요.

○박수영 위원 아마 기재부는 불안하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이런 측면을 같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충분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그 안에 넣어야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수출입은행이 심사기준을 만들겠지만 수출입은행 심사기준 자체를 여기 법에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수출입은행의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으로는 징검다리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는 수익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본 법안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웃기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 부대조건 다세요. 제 부대조건 반드시 다세요. 이 법 회한한 법이에요, 내가 볼 때.

○소위원장 정태호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두 번째 사항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간접투자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접투자대상이 확대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리스크관리에 추가적인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9페이지 우측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투자대상이 대폭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과 간접투자대상 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은석 의원님의 간접투자대상 확대 이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여기는 신중한 접근 필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통과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동의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18조 1항 각 분야가 수출입과 관련되는 분야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수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집합투자라는지 벤처에도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수출입은행의 본래 역할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수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36페이지, 부칙 조항인데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돼 있는데 아까 하위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 시행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통과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제 수은법하고 공급망법 의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심의해서 합의한 것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안

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집행자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에 따라서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은행법 등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를 은행법이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말씀해 주신 국회사무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법 시행일인 24년 6월 27일부터 5년간인 29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에 출범하여 지원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나 시기상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금의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친 이후 재원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161페이지 보시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입니다. 그래서 기업규모별로 볼 때 대기업 승인액 기준으로 볼 때 2024년도는 92.6%고 2025년 7월까지 볼 때 대기업이 승인액 기준으로 비중이 88.5%고, 지원 분야별로 보시면 첨단전략산업의 경우에 24년의 경우 62.5%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분야가 첨단산업기금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 대출 건인데 동 대출 건에 대해서 건별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출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소위에서 비공개로 열람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더라도 5년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이라는 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 이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되 5년까지만 최대한 연장하라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5년마다 한 번씩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을 해 주시면 당초 재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5년으로 딱 한정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구는요, ‘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5년까지만 딱 연장해라라는 문구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매 5년마다 기금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또 5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5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점검하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나는 이게 5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5년마다 연장한다’ 이런 취지로 나는 해석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5년만 한다라는 취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원래 5년 돼 있고요. 5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은.

○**박수영 위원** 최대 10년까지 간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 조항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정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이 아니어서 국회보고 등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으로 규정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거든요. 다만 국회에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사실관계 확인인데요.

지난번 소위 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은 뭐였나? 이 기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정부 기금으로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국회 통제와 국민 통제 밖에 있으

면 안 되니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 박수영 위원 차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5년에 5년, 10년이고 그 정도면 한번 정도는 더 그때쯤 국회가 다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5년 연장을 해 주고 그때는 이 기금의 존폐 여부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방식이 좋지 매 5년으로 바꾸는 데 저는 반대고요. 지금 형식으로 찬성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차관님,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전략산업이랄지, 사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략산업이 바뀌기는 하지만 이 공급망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이 벗어난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은 항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지금 기재부가 걱정하는, 정부 내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에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각종 WTO 체제나 정부 보조금 형태나 이런 지원 문제 때문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보는데 사실은 이 구조는 이제 좀 무너지는 형태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이 공급망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정부가 국회와 또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국제무역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까지 다 주는 마당에 이 공급망이 정부 내 기금으로 편입이 안 된다는 이유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은 국채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기금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역할이라고 그래서 100% 정부가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니면 완전히 민간 영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돈의 성격이라는 게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하고요, 이것을 장학재단이 운영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공급망 안정과 관련해서 바로 해야 될 것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반관반민의 성격이 있으니 정부에서 보증채권을 발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 그것을 해당되는, 관련되는 사업에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기금으로 들고 오게 되면 ‘이것까지 정부가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이 해야 되나?’ 그런 중간적인, 성격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고요. 정부 보증채권을 국채로 발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기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고 대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보증채무를 발행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 그래서 연차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런 법 조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법은 한시법인데 무기한법으로 다시 조항을 만들려고 그리고 뜻은 한시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박수영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법 자체가 한시법이라면 한시적인 의미에서는 ‘5년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5년의 범위’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법 자체가 한시법은 아니고요, 기금의 조성만 일단 ‘5년간’ 이렇게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이라는 얘기지요,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진성준 위원** 그러면 연차보고 문제를 부대의견으로 하시고 원안대로 일단, 이제 설치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원안대로 해서 가시지요.

○**박대출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원안대로?

○**박수영 위원** 필요하면 그때 또 연장해 주면 되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원안대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부대의견은 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 부대의견 달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연차보고서는 지난번에 연차보고서 방안으로 합의하기로 하셔 가지고 그것은 법 조문 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법 조문에 들어갑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잠시만요. 여기 한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위기품목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면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얘기한 국회사무처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다음 174페이지,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협동조합법.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협동조합과 행정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경 시 신고하여야 되는 사항은 신고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행법상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획재정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법 개정안의 취지에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

가직으로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의견을 낸 대로 기획재정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18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회의 근거 마련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183페이지, 개정안은 협동조합 등이 비대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개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이사회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의견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도 정관의 조항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현재도 되는데 굳이 법률에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도 잘되고 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는 정관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유가 뭐지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기획재정부지속가능경제과장 전보람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방식이나 의결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작은 기관의 경우에 이사회 개최 방식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또 정확하게 이게 대면인지 아닌지 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정관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사회만큼은 법률에 명확히 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이 법의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협동조합 자체가 주요 사항이 아니면 변경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공부가 되어 있나요, 주요 사항과 주요 사항이 아닌 게?

○ 김영환 위원 어떤 거요? 이전 겁니까?

○ 박대출 위원 예, 이전 거고 그다음에 이사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내용들이 다 연결되거든요.

이사회 개최를 하는데 비대면 방식 회의 근거 규정이 없다, 이것은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내가 보여지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이것은 회계적인 문제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이 법의 전체적인 방향이 협동조합이 아주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입법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다가는 협동조합이 그냥 막…… 일선에서 무질서하게 운영되거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은 지금 공부가 되어 있나요? 전혀 없이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검토 좀 해 보시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을 이렇게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 진성준 위원 박 위원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편의상 이사회를 비대면 회의로 막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별도의 송수신 장치나 동영상, 음성 장치가 갖추어진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회 의장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이사회를 운영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 박대출 위원님의 우려도 일리가 있으니 이를테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말을 어디에 넣어서, 또는 ‘대면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의견요.

○ 박대출 위원 전혀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 박대출 위원 저한테 질문을……

○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지금 정부에 제안을 한 거고……

○ 박대출 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이것 공부해야 돼.

○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 차규근 위원 금방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안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 박민규 위원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설립 시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중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즉 전체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뒤에 기획재정부령, 그런데 물론 이것은 검토의견에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보자고 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박대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협동조합이 매우 어렵게 법정단체로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못되거나 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비대면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지금 현재 검토의견으로 나온 의견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님, 저는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까 1에 있는 변경신고 문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핏 잘못하다가는, 이게 기존의 운영에 예상치 못한 다른 변화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정관에서 정하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법률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자기를 조합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하는 방식은 정관으로 정하라 그러면 끝난 것 아닌가요? 그걸 굳이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왜 이런 것까지 법률에 올라가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까 저희 실무자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정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히 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게 대면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해라 이런 것은 이사회 사안의 경중이나 개수에 따라서 대면보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안 되는 경우만 비대면으로 해라 이것은 오히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박대출 위원**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 이것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잠깐 절충안 제안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정태호** 예, 박대출 위원님 절충안을 제안하신다니까……

○**박대출 위원** 여기 이사회 근거에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 비대면 방식, 이것 앞의 변경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행정적인 비효율성이나 중복성을 줄이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쉽게 가자 이런 단순한 측면 외에는 다른 면이 없다 그러면 팬찮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예상 못 하겠어요. 협동조합이 조합원들 다수의 뜻과 상반되게 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우려는 없을까 이 부분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걸 좀 하자고.

○**소위원장 정태호** 자,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안의 내용이 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기존에 설립 시 신고돼 있는 것을 변경할 때 지금은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변경신고를 하자 이 취지잖

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비대면 회의를 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아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아니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막 권장하듯이 법률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지금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지요.

○박대출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아까 소위원회 통과라고 사실상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라는 그런 수식을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오히려 수식어를 넣으면, 지금은 정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식어를 넣으면 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정태호 오히려 정관에서는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차라리 이 법안은 이 부분을 드롭시키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

○소위원장 정태호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단위의 이사회를 열려면 사실은 전국에서 다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정관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로 또 한정을 하면 오히려 비대면 회의가 더 위축되고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드롭시키는 게 낫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게 일리가 있네요.

○진성준 위원 그러네요.

○박대출 위원 드롭을 시키다니 뭘 드롭을 시켜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개정 안 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것을 개정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 제한을 두시려면.

○진성준 위원 만약에 제한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비대면 방식의 이사회 회의 근거 마련 이 부분은 그냥 보류해 버리면 되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원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자든지 이거거든요.

○박대출 위원 각자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지금 운영하도록 놔두자 이거지요? 그런 취지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러니까 삭제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정태호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보류인가요, 삭제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셔야지, 이 법안 통과시켜야

되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예,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85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과 기업의 회계용어 간의 혼동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보이고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는 대차대조표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여 재무상태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유사 법령에서도 이미 바뀌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저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게 본회의 할 때마다 계속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여러 건을 찬성을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일괄 정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법령에서 짹 검색해서 일괄 정비하면 될 것을 본회의 할 때마다 한 서너 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소위원장 정태호**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게 행정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관님, 기재부 소관이잖아요. 예산회계법 관련되는 건데 기재부에서 좀 일괄 정비하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모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모법을 가지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면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정비해야 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게 모법이 공인회계사법이어서 금융위 소관 법이라면 또 금융위에서 어떻게 해 보는 방법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것은 정부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괄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3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도 통과됐습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188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 기간은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설립변경신고에 대한 적용례입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례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율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외국환거래법이요.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9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 신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외국환거래법의 정의 규정에 신설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업체자가 그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여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규율하면 가상자산업체자가 가상자산 자체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며 등록 위반, 보고·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검사·감독 및 제재 권한을 금융위 위원장에게도 위탁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9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규제 신설 여부입니다.

중단 부분의 첫 줄을 보시면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업체 등록 규제를 신설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하려는 취지이지만 이미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서의 불법재산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전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 전반에 대해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업체 등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중복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이후 한국은행 등에서 FIU로부터 자료를 공유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서 FIU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FIU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비 등을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말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래소 및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체업 등록 규제 신설 시 등록 요건을 새롭게 갖추어 가상자산이체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 개정안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가상자산사업자는 당초 특금법상 신고 수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신설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 등으로 업역을 세분화하여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등의 진입 규제와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2 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바 동 외국환거래법에서 중복적으로 가상자산이체업자 등록에 대해 진입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양 법률상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자산이체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가상자산 관련 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최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에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죽 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오해는 뭐냐, 특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을 100% 규제하고 있는데 왜 외국환거래법에서 이것을 똑같이 중복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금법이라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는 뭐를 다루느냐, 불공정행위나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 이것을 적발·방지하는 목적이고요.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은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국경 간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표적인 외환으로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개별 법에서 규정을 하지만 이것은 또 외환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죽 흐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도 실질적으로, 즉 가상자산이라는 게 거의 달러와 비슷하게 무역대금이나 해외송금을 하는 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특금법의 적용을 받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가상자산도 특금법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금법에 조항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달러의 국경 간 흐름을 파악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의 국경 간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돼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불법행위만 하거든요, 지금 특금법은?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왜? 달러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정을 하려는 목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규제 신설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규제를 중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업법의 적용도 받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상자산도 특금법 적용도 받고 가상자산법도 받고 외국환거래법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신설로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경 간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 ‘너, 국경 간 거래를 하지 마’ 이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달러의 국경 간 흐름을 파악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이미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 자체도 지금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에서 국경 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죽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써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달러처럼 우리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게 지금 기재부차관님이 좀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관세청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가 보니 이미 실물에서는 달러 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법에 대개 거의 다 안 걸립니다. 다 이렇게 걸려지지 않고 현재 빨리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점점 규모도 커지고 그 가운데 불법인 것도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옛날에 환치기처럼 가상자산치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부작용도 많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법안을 어떻게든 꼭 좀 개정해야 될 문제고.

지금 사무처에서 이야기하신 것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다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그 법의 취지나 현재 여러 법률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기재부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좀 잘 짚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정태호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겸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처럼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특금법으로 불법적인 부문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통해서 불법·합법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달러랑 똑같은 통제방식을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법의 취지는?

####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가상자산을 달러와 똑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냐라의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랑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만 통제를 하고 다른 나라는 통제 안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게 걱정이 돼서 묻는 거예요.

####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국제금융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 달러랑 거

의 똑같이 통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은 달러는 송금할 때 1000달러 이상은 저희 외전망에 다 보고를 해서 거래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관세청·FIU에 통보를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거래라든지 불법거래라든지 쓰이고 있고 쓰일 우려가 큰데 지금 이게 국경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외전망에 달려와 같이 똑같이 집중을 해서 그 정보를 필요한 기관, 국세청이나 FIU나 관세청이랑 세어를 해 가지고 만약에 관세청에서 통관정보랑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불법거래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박대출 위원** 그것은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만의 통제방식이 되고 전 세계적인 통제방식은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인 방식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한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외국이라면……

○**박대출 위원** 쉽게 말해서 미국은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고……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미국은 안 합니다.

○**박대출 위원** 전 세계에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안 하고요. 개도국은 다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박대출 위원** 개도국은 다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도국은 외환 자체를 통제하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가상자산도 무난하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박대출 위원** 생각되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기존의 화폐 위주로 지금 통제방식을 설명하는 거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위원님, 그런데요 미국이나 일본……

○**박대출 위원** 하고 있느냐 없느냐, 시행하는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선진국은 안 하는 게 선진국은 외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외전망이, 달러가 나갈 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체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특별히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달러를 마음대로 갖고 나가게 하는 체제가 아니라 일정 부분 이상의 달러를 갖고 나가려면 신고를 하고 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달러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들고나가는 데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체계,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아까 검토의견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복 규제의 문제. 그런데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법안에 대해서 중복 규제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입장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국내 거래 말고 외국환 자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 등록을 하고 그런 등록요건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를 테더나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이 외국환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닌데 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라서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환을 별도로 취급하는 거면 따로따로 등록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 관련 법에 따라서 등록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외국환이 아닌 그냥 똑같은 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다른 등록요건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양 법률 간의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똑같이 등록의무를 타 법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정태호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법률 간의 상충이라고 하는 것 지금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러니까 지금은 특금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있고 불수리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은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그동안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제 거래에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환 전반적으로 관리나 이런 게, 아까 특금법인가 그것 관련돼서 그것으로 지금 다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 그런데 여기서 사실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은 모니터링 보고의무를 규정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등록을, 여기서 등록도 하고 보고도 하라는 부분인데 등록 부분은 사실……

200페이지 보시면 특금법상 지금은 신고입니다. 지금은 신고인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별로 세분을 해 가지고 진입규제를 인가인지 허가인지 2단계 입법에서 다시 규정을 할 건데 가상자산법에서 등록요건에는 맞았는데 사실 여기서 등록요건을 새롭게 규정을 하면 서로 등록요건에 안 맞을 경우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거래법에서 등록요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2단계 입법이 만들어질 예정인 상태고 지금 특금법에서 신고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 정부에 먼저 묻고 싶은데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가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다 연관돼 있고 연동돼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도?

그래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 스테이블코인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데 따른,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화폐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니까 외국환거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되어서 일괄해서 정부 제출 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같이 가야지 어떤 것은 아직 논의가, 이를테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입장이 정리돼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또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판단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만 외국환거래법에 넣어서 모니터링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어느 한쪽만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서 한꺼번에 처리되어야 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게 지금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1·2·3이 있을 때 1번이 전전되면 2번이 더 축소돼야 된다는, 조항이 바뀌어야 된다든가 1번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행이 되면 3번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1번을 특금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이 규정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 이게 가더라도, 이게 가고 안 가고 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외국환거래 차원에서 볼 건가 말 건가의 문제고 스테이블코인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되면 1번 하면 안 돼, 3번이 되면 2번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1번은 1번대로 전전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외국환거래법하고 관련되는 포인트는 뭐냐? 1번이 1단계인가 2단계인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달러가 우리 해외송금이나 무역대금 결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 무역대금이나 해외송금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경 간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판단을 가지고 외국환거래법에 규정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 1번이 진행되면 2번 안 할 수도 있고,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상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다 포괄한다는 개념이에요?

○**소위원장 정태호** 진성준 위원님 먼저……

○**진성준 위원** 설명이 이해는 되는데 이를테면 국회사무처에서의 검토는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특금법을 통해서도 거래정보들이 FIU에 보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법의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독과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일괄해서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가상자산 2단계 법 또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털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제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팀원으로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보고를 받았고 내일도 더 중요한 심층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 관련된 말씀인데 최은석 의원님께서 이것을 왜 발의했는지 너무 잘 알압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미국에서 너무 추진하고 있고 중국마저 홍콩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달러를 우리는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상자산 이퀄,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너무나 달러가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입법취지는 맞으나…… 진성준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1이 된다고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독립적으로 다 필요하고, 심지어 이 개정안은 반드시 달러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명분도 저는 동의하지만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금융위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최근에야 금융위원회가 독립한 결정이 됐고 올해 10월 달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던 게 한 달 정도 늦춰져서 이제서야 한국은행, 금융위, 기재부가 빨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정부안을 내놓으려고 어쨌든 저희 여당 TF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보니 이 정부안이 어쨌든 11월에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안에서 금융 관련된 이 가상자산이라는 걸 처음 명칭 한 것 자체가 특금법이니 반드시 이 법안 내에서 외국환거래법과의 어떤 법, 달러 컨트롤에 대한 규제도 다시 동시에 진행될 거고 그 논의 체제에 어차피 기재부가 있으니까……

이 법안은 매우 의미 있지만 지금 현재 심사해서 처리하기에는 좀 빠르다, 한두 달 뒤에 논의해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법안소위나 당 TF나 또 국민의힘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논의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 하여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저희들 간사와 또 최은석 위원님 그리고 또 정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사님 논의하기 전에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모든 체제의 시스템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국환관리에 대한 여러 문제, 가상자산 입출입에 대한 문제들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고 만약 그게 상충이 된다 하면 그 안이 제안되었을 때 수정안을 내지요. 저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견을 그렇게 냅니다. 수정해 주세요.

○**진성준 위원**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정부에다가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통합적인 논의

가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지금 그것 하고 있으느냐 묻는 겁니다. 그 점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충분히 취지는 다 설명이 됐고.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아니, 됐어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이게 아주 드물게 정부와 수석전문위원, 사무처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안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은석 의원안도. 왜냐? 우리가 외환자유화된 국가가 아니거든요. 통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테더 같은 경우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니까 기재부에서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특금법 개정 그쪽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공급하고 다음번에 한번 논의하고 오늘은 보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합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시지요. 오늘은 좀 넘기고요.

하여튼 수정안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할 테고.

2번 넘어가 주세요.

○최은석 위원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제가 작년도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미 1년 갔습니다. 1년 사이에 또 수많은 가상자산들이 해외대금 결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자체에서 누수가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위원장 정태호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최은석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않도록 이 건만이라도 좀 독립적으로 빨리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정부의 일정 계획을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정부의 답변을 들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저희가 금융위원회랑 작년에 합의한 것은 가상자산이 너무 많이 확산되고 국경 간 거래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법거래를 방지하고요. 그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완료가 되면 또 가상자산 중에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 이런 부분들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경 간 거래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접근하는 걸로 지금 금융위와 저희 기재부 간에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가상자산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거지요, 현재. 지금 없으니까요. 그것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2단계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정부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헷갈리는 게 가상자산을 뭘로 사지요? 돈으로 사잖아요. 돈 흐름 다 하잖아, 우리가. 돈 흐름 다 FIU에서 포착이 되잖아, 우리 금융시스템으로. 안 돼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아니요, 가상자산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다른 가상자산으로도 살 수 있거든요.

○**박대출 위원** 다른 가상자산은 뭘로 사?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그것은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보내서 살 수도 있고요.

○**박대출 위원** 미국에서 누가 주는데?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계좌로……

○**박대출 위원** 공짜로 주나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재환** 아니요, 계좌도 갖고 있고……

○**박대출 위원** 계좌를 갖고 있어도 그 돈은 우리가……

○**진성준 위원** 처음에 나간 것만 모니터되고 그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모니터가 안 되겠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이제 이 논의는 중단하고요.

기재부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외국환업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1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준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업권별 외국환업무를 구분하고 하위법령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 정의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법인이 해외지사에 설치비·경비 지급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지급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국내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확장 또는 운영하면서 자금을 수수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에만 포함되고 자본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체계상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거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설치 및 관련 자금 지급을 자본거래에서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에만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기재부는 이미 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함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얘기해 준 국회사무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9페이지 표에서 수정의견으로 그렇게 현행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234페이지입니다.

외환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서 외환전성부담금에 대해서도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외화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없는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전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기재부장관이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하에서는 환전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이 환전업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전업자는 폐업한 이후 기재부장관에게 별도로 환전업무 등록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폐업자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의 직권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폐업으로 인한 직권취소의 근거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법 제12조제1항의 호로 신설할 경우 단순 폐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제4항에 따라 3년 동안 재인가·등록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항의 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항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또한 타 입법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같이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국회사무처에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별도 항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관한 정

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그대로 개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진성준 위원 수정안이 있지 않나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수정안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수정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수정안은 어디 있어요? 수정안을 봐야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항을 따로, 원래 1항 15호로……

○소위원장 정태호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저희가 별도……

○소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수정안을 나중에 만들어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정안을 만들어서 소위……

○박대출 위원 수정안 만들고.

다른 조항에도 이런 것 말고 폐업하는데 등록취소를 직권으로 별도로 하고 이런 조항이 있나요?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법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소위원장 정태호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수정안 만들어 주세요.

○박대출 위원 수정안 만드시고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한테 답을 좀 주세요. 이것 불필요한 법 같아.

○소위원장 정태호 그다음 부칙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여기 239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입법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아니, 수정안을 만들어서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정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245페이지, 부칙.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5페이지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안 제8조제3항과 같이 전문외국환업무 범위를 개편하는 경우에 기존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자의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1년 내에 다시 바뀐 법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안 제12조제1항제15호를 신설해서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의 직권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정부 입장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위원님 의견이요.

○진성준 위원 이것도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칙안도.

○소위원장 정태호 예,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통과된 거는 통과된 것대로 하고, 수정안 문구가 안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거지요? 검토는 다 한 거고, 어떤가요?

○행정실장 정상훈 1번에서 이견이 크셔 가지고……

○박수영 위원 다음에 어차피 하면 되는 건데……

○소위원장 정태호 그런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1번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 법에 대한 심의는 이제 끝났고 다음 회의 때 그 1번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수정 문구까지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청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날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조직법상으로 통계청법을 이제 통계데이터처법으로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소관 법이잖아요? 그다음에 공운위법 부분이 있고, 그게 아마 패트로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야 간에 저희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 ○출석 위원(10인)

김영진 김영환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최은석

### ○첨가 위원(1인)

유상범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 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